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 제명 변경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4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률 제명 변경	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신설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6. 27.
3.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III. 검토의견

1. 법률 제명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제명 변경).

현행	개정안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u>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u>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중 “처벌”을 “예방”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 중 “처벌”을 “예방”으로 한다. ③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처벌”을 각각 “예방”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나. 검토의견

-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임.

당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 등 총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차례의 소위를 거친 후 2021년 1월 8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발의되었던 법률안과 청원 6건 중 5건이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 제명에 ‘처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처벌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담보가 주된 입법취지였던 것으로 보여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연혁 >

구분	의안(청원)번호	일자	법률안
발의 법안	제2100977호	2020.06.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제2105290호	2020.11.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
	제2105421호	2020.11.1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의원 등 11인)
	제2106019호	2020.12.0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2106436호	2020.12.14.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의원 등 12인)
청원	제20100013호	2020.09.22.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미숙 외 10만 인 국민동의)
대안	제2107249호	2021.01.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정 법률	2021.01.26. 공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9조)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으로,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과 사업주 처벌 등을 아우르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3장 중대 시민 재해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조	정의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처벌
제2장 중대 산업 재해	제3조	적용범위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장 보칙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처벌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 원 및 보고

-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의 예방 등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면서도 법률의 성격과 내용 등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데,¹⁾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제정 취지와 현행법의 목적 규정에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명시되어 있음²⁾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에 대해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제명 변경이 실제 법 집행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약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³⁾.

1) 법률 제명의 기본원칙으로는 ① 알기 쉽고 간결할 것, ②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일반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것, ④ 가능한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은 지양할 것 등이 꼽히고 있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74-75.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5.08.28.) ‘중대재해처벌법’시행 3년,입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아

○ 전체 사건(1,252건) 전수조사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

- 사건처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내용의 변경 없이 제명만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수범자와 일반 국민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입법정책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지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법의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각 장마다 ‘의무사항’과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제명에서 ‘의무사항’만 기술하는 것은 법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이 될 수 있는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에 대해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

- 관련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
- 벌금사례 :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1,140만원으로 20억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u><신설></u>	<u>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u> <u>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u> <u>대재해와 관련된 형사처벌과</u> <u>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다</u> <u>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u> <u>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u> <u>정하는 바에 따른다.</u>

나. 검토의견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관련 개별 법률 등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적용범위’를 규정

할 때와 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 다른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법률 간에 중복·모순이 발생하거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⁴⁾ 「중대재해처벌법」과 적용대상이 중복되거나 모순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내용과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법률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률로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⁵⁾
-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⁶⁾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원인조사 등을 규정하고 법 위반시 벌칙

4)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2024), 258.

5) 그 외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⁷⁾. 그러나 그 형사처벌은 주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루어지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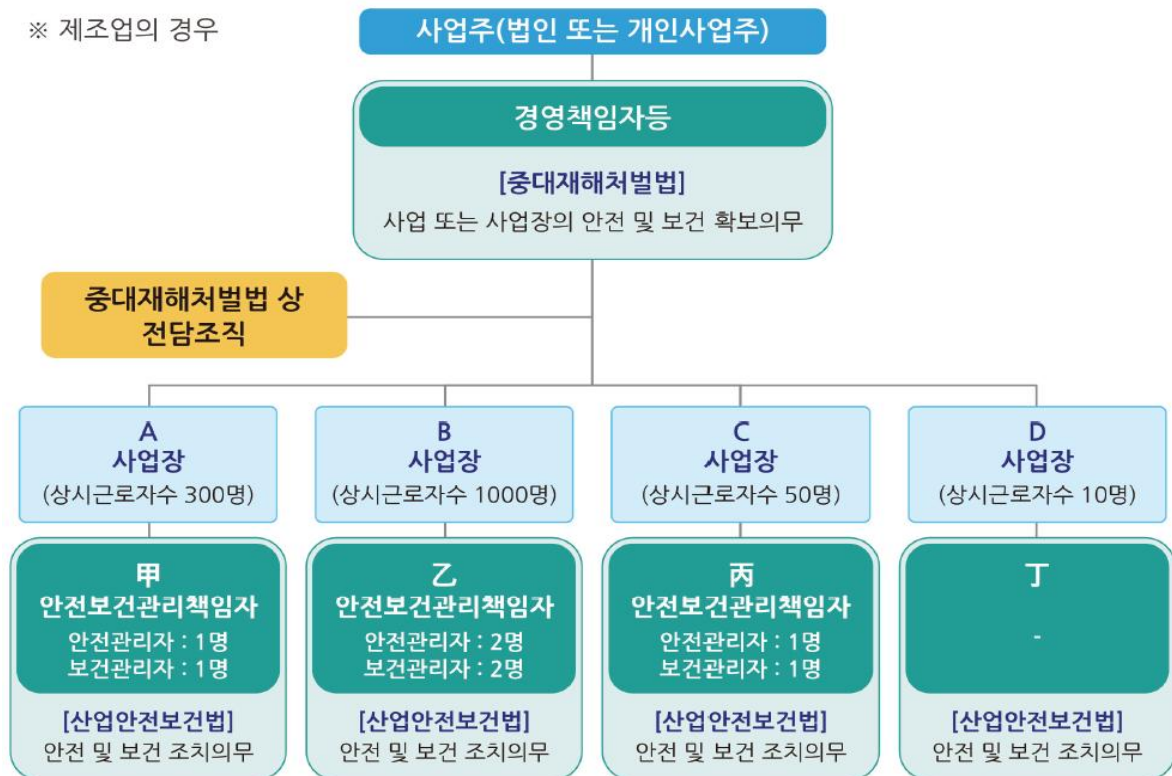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

-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상세히 규율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의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 이는 직접적인 조치의무가 아닌 해당 조치사항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하는 관리·감독상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한 형사책임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음.

7) 예: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68조제2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175조제2항제2호).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70조제2호).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계 등 >

※ 제조업의 경우



-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대상으로 ‘중대 재해’를 규정하는 반면,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개념상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부상·질병의 개념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음.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개념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발생	1명 이상 발생
부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질병 등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기업 등이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실제 법률 집행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고, 위반행위의 주체 및 객체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중대재해 결과 발생을 필수적 구성요건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단순한 특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각 독립하여 죄가 성립될 수 있음.⁸⁾

실제 기소 또는 판결 과정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지 않고 책임주체별로 각각 독립하여 죄가 성립되거나, 소규모 업체와 같이 경영책임자가 실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무의 내용이 상이하여

8) 「중대재해처벌법 별칙해설」, 대검찰청(2022), 114쪽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음.⁹⁾

「중대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 간 내용적 차이와 실제 적용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수정사항 및 체계 자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안 제2조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이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상이한 바, 입법 취지에 따라 규정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대검찰청, 앞의 책, 115쪽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 행정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법체계상 이미 실질적인 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특정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 조항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해당 조항의 선언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